

# 한국분말야금학회지 연구 부정행위 관련 규정

제정: 2016. 06. 17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분말야금학회의 학술지인 한국분말야금학회지에 투고·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기준, 운영, 징계 등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 윤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윤리위원회)

- ① 규정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한국분말야금학회지 연구 윤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연구 윤리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분말야금학회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편집 위원회에서 연구 부정 행위 안건이 상정되면 연구 윤리 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③ 연구 윤리 위원회의 위원은 총 5 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들은 편집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 제 2 장 연구 부정행위

### 제 3 조 (연구부정행위의 대상)

연구 부정 행위는 한국분말야금학회지에 투고·게재되는 논문과 제출 서류 및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 제 4 조 (동시 투고)

투고 논문은 다른 국내·외 학술지에 동시에 또는 선·후에 관계없이 중복 투고할 수 없다.

### 제 5 조 (중복 게재)

- ① 다른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중복 게재할 수 없다.
- ② 연구보고서이나 박사 또는 석사 학위 논문의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 제 6 조 (표절)

- ① 표절이란 고의적으로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표절은 연구자가 이미 발표된 논문의 저자와 동일한 경우(자기 표절)에도 적용된다. 다만,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라도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 제 7 조 (위조·변조)

위조나 변조는 다음과 같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결과물의 수치, 사진 등을 의도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란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 3 장 심의 및 의결 절차

### 제 8 조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 ① 학회 내·외에서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면, 이를 연구 윤리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 자료를 제출한다.
- ③ 연구 윤리 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해당 연구자에게 2 주 기간 내에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 ④ 연구 윤리 위원회는 연구 부정 행위 여부를 만장일치 의결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출석 위원 3/5 의 표결 동의로 판정한다.

### 제 9 조 (징계 및 결과처리)

- ① 연구 윤리를 위반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징계를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1. 회원 제명
  2. 한국분말야금학회지에 대한 논문투고금지
  3. 논문이 게재된 경우 논문을 삭제하며, 게재예정 중인 논문은 게재불가 처리
  4. 관련 기관에 학회 연구 윤리 위반 내용을 통보
  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
- ② 연구 윤리 위반 내용은 2 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홈페이지에 공고 하도록 한다.
- ③ 제 1 항의 2, 3, 5 호 징계 내용은 연구윤리위원회 의결 후 편집위원장 명의로 징계내용을 통보하며, 1, 4 호 징계 내용은 이사회의 승인 후 회장 명의로 징계 내용을 통보 한다.

### 제 10 조 (이의제기)

- ① 연구 부정 행위로 판정된 연구자는 연구 윤리 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1 회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연구 윤리 위원회는 이의 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재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부 칙

### 제 1 조 (규정의 개정, 개폐)

본 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 개폐할 수 있다.

### 제 2 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가결된 날(2016. 06. 17.)부터 시행한다.